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8. 3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1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8. 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동행정 팀장 이 용 근

가.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중등교육이 의무 무상교육 적용을 받음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통장경력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통일 함(안 제3조)

○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2001.10.20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의무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2005.3.24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장학금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중등교육이 의무 무상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통장이 유공자인 경우 통장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장학생의 자격이 있었으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장학생의 자격을 통일하였음.

○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각각 50퍼센트씩 안배하도록 규정된 안 제5조제2항은 중학생이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중등교육이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의무 무상교육을 적용받아 왔고 2005년도부터는 중등교육이 의무 무상교육으로 전면 시행

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동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중등교육이 의무 무상교육 적용을 받음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 관련규정 삭제(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통장경력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통일함.(안 제3조)

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근거

(1) 교육기본법(2005. 3. 24 법률 제7399호) 제8조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1.10.20 대통령령제17390호) 제23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5. 6.10 ~ 6.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7.18)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3조중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구당 통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 통장정원"으로 한다.

제8조중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중 "지역사회발전과 조국근대화"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고등학교---------- ---------- ---------- ----------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2.(생략) ②(생략)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 ---------- ---------- . (단서삭제) 1.~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5조(선발) ①(생략) 1.~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장학생 정원)** ------서울특별시마포구 통장정원----------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